

수원지방법원 2020. 9. 11 선고 2019나883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0. 9. 11 선고 2019나88347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10. 11 선고 2018가단5520 판결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1. B

소송대리인 동수원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형진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샘 담당변호사 서경원

3. D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진

4. E

변론 종결 2020. 6. 19.

판결 선고 2020. 9. 11.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10. 11. 선고 2018가단5520 판결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 C, D, E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주위적으로,

가. 피고 C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 F에게 안양시 만안구 G 대 381㎡(이하 'G토지'라 한다) 중 각 4/38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나. 피고 B는 원고와 선정자 F에게 안양시 만안구 H 도로 38㎡(이하 'H토지'라 한다) 중 각 4/38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다. 피고 E는 원고와 선정자 F에게 안양시 만안구 1대 41㎡(이하 'I토지'라 한다) 중 각 4/38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라. 피고 D는 원고와 선정자 F에게 안양시 만안구 G 대 477㎡ 중 149/477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1980. 9. 10. 접수 제54575호로 마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3이전등기'라 한다) 중 각 4/38지분에 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예비적으로, 1) 가. 피고 C는 원고와 선정자 F에게 G토지 중 각 2/38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나. 피고 B는 원고와 선정자 F에게 H토지 중 각 2/38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다. 피고 E는 원고와 선정자 F에게 I토지 중 각 2/38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라. 피고 D은 원고와 선정자 F에게 이 사건 제3이전등기 중 각 2/38지분에 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결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쪽 위에서 제8행의 '입회인 A'은 '입회인 W'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쪽 위에서 제6행 내지 제8행의 '이에 따라.. 보이는 점,'을 삭제하고 '이에 따라 N은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 재산 전부에 관하여 사인증여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었던 점,'으로 고친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의 N에 대한 사인증여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유류분반환청구권 포기약정은 상속협의분할 합의의 효력 소멸을 해제조건으로 한 법률행위의 부관인데, 상속협의분할 합의는 N이 당시 미성년자인 피고 B, T에 대해서는 이해상반 행위임에도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대리인으로서 체결함으로써 피고 B, T에 대하여 무효이므로, 피고 B은 원고 및 선정자 F에게 유류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나머지 피고들은 유류분 반환의무를 부담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유류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기에 기재된 문언의 객관적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것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한편, 소극적 소송요건의 하나인 부제소합의는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될 때 허용되며, 그 합의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46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합의서의 문언 내용, 합의서 작성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및 선정자 F과 N, 피고 B 등은 N이 원고 등에게 일부 상속재산을 양도하는 대신에 유류분 반환청구 및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과 관련된 더 이상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의도로 부제소 합의를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원고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전제로 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인 유류분 반환청구는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부제소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① 원고와 선정자 F은 1981. 8. 31. 피고 B, N, O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당시 원고와 선정자 F은 위 유류분반환청구의 상속재산 목록에 이 사건 쟁점토지 중 피고 B의 179/477지분을 포함하여 기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경위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합의서(을가 제3호증)는 망인의 사망 이후 위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계속 중인 1981. 12. 30. 원고 및 선정자 F, N, 피고 B(N이 법정대리인) 등 망인의 상속인들과 상속인이 아닌 U(망인이 혼외자로 인지하지 않음)을 포함하여 작성되었다.

③ 이 사건 합의는 '망인의 유언서(을가 제2호증)에 따라 망인의 재산 일체를 N의 소유재산으로 귀속됨에 동의하고, 기존에 상속인들 명의로 이전된 부동산은 그 명의의 소유로 인정하며, N은 가족간의 화목을 위해 망인으로부터 받은 유산 중 일부(해당 별지) 분할양도하고, 상속인들은

분할양도 받음으로써 상속 및 유류분 재산권 일체를 포기하고 제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④ 이에 따라 원고 등은 당시 제기했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취하하였고, 이 사건 소제기(내지 2018. 4.경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갑 제8호증) 이전에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합의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피고 B에 대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합의는 원고, 피고 B 등 상속인들 명의로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을 그 명의의 소유로 인정하고, N이 이미 포괄적 사인증여를 받은 망인의 유산 중 일부를 원고 등에 대해 분배해주기로 하는 내용으로 피고 B와 N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 등은 피고 B, N 등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던 상황이고, 이러한 상속재산과 관련한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N이 피고 B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체결한 이 사건 합의가 민법 제921조 제1항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5281 판결 등 참조). 또한, 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6633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및 선정자 F의 유류분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이 사건 제1, 2, 3소유권이전등기 내지 이후 분할된 K토지, M토지, H토지, I토지, G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 C, D, E는 망인으로부터 직접 매수하거나 분할된 토지를 L, 피고 B로부터 매수한 양수인들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 D, E가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이 사건 제1, 2, 3이전등기(내지 이후 분할된 G토지, I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해 원고 및 선정자 F의 유류분권리가 침해되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거나 유류분 반환의무를 수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또한,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2020. 4. 28.자로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원고 및 선정자 F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침해되었음을 안 날(적어도 1981. 12. 30.자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 등이 해당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취하한 때)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 및 선정자 F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 C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이유 있다.

① 원고 및 선정자 F은 1981. 8. 31. N, 피고 B 등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당시 이미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피고 B의 179/477지분 소유권이전등기(이 사건 제2이전등기)를 상속재산으로 주장하였다.

②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피고 C의 149/477지분 소유권이전등기(이 사건 제1이전등기), 피고 D의 149/477지분 소유권이전등기(이 사건 제3이전등기)는 모두 위 이 사건 제2이전등기와 같은 날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 및 선정자 F은 적어도 1981. 8. 31.에는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 경위를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합의 이전에 N에게 '기 처분부동산 및 채권(을가 제4호증)'이라는 제목으로 상속재산을 수기로 기록한 서류를 교부해주었고, 그 내용에는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매각대금'이 기재되어 있다.

④ 원고 및 선정자 F은 1981. 8. 31.자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했을 무렵에는 자신들의

유류분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으로 중단되었던 소멸시효는 1981. 12. 30.자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 등이 해당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취하한 때(이 사건 합의서 작성일에 비추어 적어도 1982.경 위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보인다)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 따라서 원고의 피고 C, D, E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각하하며,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희찬

판사김선숙

판사서동민

별지

1) 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로 유류분반환청구를 추가하였으므로, 항소취지도 그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